

가. 입찰제도 관련

1

지역업체의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 산정 방법

○ 조달청에서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 산정을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 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시1) 기존에 있던 건설업 면허를 신설법인에 포괄적 양수도*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신설법인의 지역소재기간 산정 시 양수도 업체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방법은?

예시1 답변) 신설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합니다. 다만,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포괄적 양수도 :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경우



예시2) 한 업체가 두 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토공)은 '03.8.1 최초 등록(현재까지 10년 이상 A지역유지), 종합건설업(토목건축)은 '08.8.1 추가 등록(현재까지 5년 이상 A지역유지)하고 있다면 동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예시2 답변) 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은 업종별 평가가 아닌 사업자별로 평가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

2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여부

- 계열회사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계열사 간의 공동수급체 구성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입찰공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
- 상기 조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9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3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 총액입찰의 경우라도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총액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의 기준 사용

- 추정금액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 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 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 예비가격 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 기준 7일전에 공개합니다.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및 제8조)

* (기재부) 기초금액의 $\pm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작성된 15개중 입찰참가자가 추천한 4개의 숫자들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 (조달청)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가격 비공개)되며, 작성된 15개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추천(전자입찰 2개, 직접 입찰 1개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번호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의 해당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 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5 공공공사 입찰한도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로 일률적인 입찰가능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발주기관은 특별유의서 등에서 일정규모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발주기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와 관련하여 시공경험이 만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심사기준은 최저입찰자가 기준점수를 통과하여야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심사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적격 심사시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낙찰자에서 배제되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통과자 중 최저입찰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만점획득 업체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6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 참가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주 업종 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관급자재대 제외)을 초과하여야 합니다(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7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따라서 입찰공고일에는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다고 하여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PQ심사시 신인도 감점 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와 영업정지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국가기술훈격증 등의 대여, 공사실적 등의 허위제출 등) -1.0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건설업 등록기준의 미달 등) -2.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상 6개월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간 동안 신인도 점수를 감점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평가항목은 삭제('19.12.18)되었습니다.

9 국가공사의 경우 50억에서 100억 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시 제출하는 검토보고서의 협회 제출여부

기획재정부 예규에는 검토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협회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1순위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한번 제출하셨다면 전산으로 등록되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결격사유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합니다.(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

11 지역제한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시기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12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하도급 관리 계획서상의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계약체결의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13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문의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36호) 별표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 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서 ‘그 이전 6개월’이라 함은 ‘최근 6개월’로부터 직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1.1.1. 예규 개정에 따라 “② 표준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한 손익계산서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에 대한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4 공사계약 후 시공을 하려고 하니 금액이 맞지 않아 공사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계약법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자는 공사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현재 계약법 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계약을 포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적격심사대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



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5 착공의 개시시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의 개시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계약후 7일 이내 착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촉박한 공사계획 수립 시간으로 목적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후 착공 준비기간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 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위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6 우천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가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천 등 악천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절차상 요건의 구비여부, 대상공사의 특성과 동 우천의 정도 및 통상범위 내의 예측가능성 및 동 우천으로 인한 실제 공사불가능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7 공사의 이행지체 중 기성대가의 지급 가부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지체상금 관련 불이익 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0.5/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신인도 감점 등의 불이익조치는 없지만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19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것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 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의 종류

계약의 부실이행,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발주처별로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지만 부실공사, 부정행위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타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발주기관에서도 반드시 입찰참가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계약 후 실행율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입찰 당시부터 내역서의 섬세한 검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21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재 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처분의 차이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사업자 별로 이루어지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처분은 등록한 업종별로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토목,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토목 면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경 면허를 통해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제재처분과 영업정지처분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2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 대상으로 인정되는 실적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 시 시공경험은 전문공사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합니다. 즉, 종합건설업체로서 전문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쌓은 실적(원도급, 하도급 불문)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며, 종합공사 실적을 내역서 내용대로 여러 전문공사 실적으로 나누어 제출한 실적 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의 경우 국토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에 따라 각 전문공사별 실적으로 분개할 수 있으며, 해당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입찰 실적평가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